

## [검토보고서]

2015. 10. 20(화) 제 2 6 2 회 임 시 회

#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



[전문위원 최영인]

#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도시계획과)

○ 제출일 : 2015년 10월 7일

○ 검토일 : 2015년 10월 8일

## 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기관의 목적 및 주요 업무와 사업, 근거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출자기관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를 정함 (안 제2조)
- 출자기관에 대한 양주시의 출자 방법 및 범위를 정함 (안 제4조)

#### 4. 검토의견

#### 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자기관의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 및 사업, 출자의 방법 등을 정한 사항으로 관계법 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나. 정책 및 재정검토

- 민관공동개발사업을 통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개발면적은 총646,989평방미터로 사업비는 약2,8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양주시 출자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비용 50억의 42%인 21억4천2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.

(PFV1) - 21억원, AMC2) - 4천2백만원)

#### ※ 출자비율 계획(안)

공공출자자	건설출자자 등(민간)	재무출자자
42%	53%	5%

○ 개발사업에 양주시가 시행자로 지분에 참여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법인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며, 양주시는 수익 에 따라 배당액을 받게되고 손실 발생시 최대 손실액은 출자금 21 억원 수준임.

<sup>1)</sup>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

<sup>2)</sup> PFV 법인의 자산금융관리 회사

○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특화사업 및 교육·문화·주거시설 등의 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법인설립에 따라 양주시는 시행자로서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.

## 다. 내용 검토

○ 조례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출자의 목적(안 제1조), 명칭 및 사업(안 제2조), 출자의 방법 및 한도(안 제4조)를 정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#### 라. 형식검토

○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#### 마. 절차검토

- 법 제7조<sup>3)</sup>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도지사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음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

<sup>3)</sup>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<sup>1.</sup>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
<sup>2.</sup>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
<sup>3.</sup>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·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